

투자 위험 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신영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을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신영신종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영신종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신영신종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신영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21년 12월 22일

5. 증권신고서

2022년 02월 08일

효력발생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 쪽)

[모집(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판매기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 www.syfund.co.kr

각 판매회사 본·지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 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의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 판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 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 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 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영신종개인연금 60 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펀드 코드: 46978]

투자 위험 등급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신영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하를 국내 주식에, 50% 이하를 우량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여 주식 및 채권의 변동성 에 따른 원본손실위험, 금리 변동 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신영신종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주로 가치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60% 이하를 투자하고, 우량 채권 및 어음 등에 50% 이하를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혼합주식형)입니다.									
	투자신탁, 증권(혼합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전환형									
투자비용	구분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 천원)			
		선취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 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 · 비용	1년	2년	3년	5년
	신영신종개인연금 60 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없음	1.320%	0.90%	1.42%	1.324%	132	271	417	732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 동종유형 총보수 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구분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			
	신영신종개인연금 60 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2004-12-23	2020/12/23 ~ 2021/12/22	2019/12/23 ~ 2021/12/22	2018/12/23 ~ 2021/12/22	2016/12/23 ~ 2021/12/22				
	비교지수(%)	9.42	10.29	7.53	4.35	7.00				
	수익률 변동성(%)	5.44	9.79	8.15	5.41	6.44				
		2004-12-23	10.29	14.66	12.70	10.73				

	(주 1) 비교지수 : KOSPI 54% + KIS 중단기지수(1~2년) 36% + Call 1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 경력년수	
					연평균 수익률(주식혼합형-공모-국내)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허남권	1963	책임(대표이사)	88 개	42,148억원	5.02%	10.83%	5.02%	10.83%	25년 5개월	
심창훈	1975	책임(채권운용본부장)	44 개	11,386억원	5.00%	10.80%			10년 3개월	
임승현	1991	부책임(운용역)	12 개	1,491억원	3.84%	0.00%			3년 4개월	
김준영	1993	부책임(운용역)	16 개	2,705억원	5.33%	0.00%			1년 8개월	

기준일: 2021년 12월 31일

-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p>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의 운용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p>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p>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시장위험	<p>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계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매입 방법	신용위험	<p>당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 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오후 3 시 30 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오후 3 시 30 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4 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쪽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syfund.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u>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p>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전환절차 및 방법	<p>이 투자신탁은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간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된 전환형 투자신탁입니다. 아래의 전환대상 투자신탁 상호간에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횟수는 연 4 회에 한하고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p> <p><전환대상 투자신탁></p> <p>신영신종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신영신종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신영신종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 신영신종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p>			
집합투자업자	<p>신영자산운용(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6 (대표전화 : 02-6711-7500, 홈페이지 : www.syfund.co.kr)</p>			
모집기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td> <td style="padding: 5px; 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모집·매출 총액</td> <td style="padding: 5px;">10 조 죠</td> </tr> </table>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매출 총액	10 조 죠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매출 총액	10 조 죠		
효력발생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2022년 2월 8일</td> <td style="padding: 5px; 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존속 기간</td> <td style="padding: 5px;">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td> </tr> </table>	2022년 2월 8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2022년 2월 8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3 부 1. 재무정보 (27 페이지) 및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32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해당 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yfund.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yfund.co.kr)



QR코드를 스캔 해보세요.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 6 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신영신종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4697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주식형)
 - 다. 개방형 · 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 ·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전환형(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X(해당 사항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 조차 (1조=1원, 원본액 기준)

(주1)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신영신종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4697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4년 12월 23일	신영신종개인연금60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 최초설정
2009년 05월 22일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신영신종개인연금혼합투자신탁 제1호 => 신영신종개인연금60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
2010년 11월 17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갱신 등
2011년 03월 09일	1)연금의 지급개시 및 지급방법 변경 2)투자신탁의 전환청구 횟수 변경 3)작성기준일 변경 등으로 인한 갱신
2011년 03월 15일	일반사무관리회사 신설로 인한 신탁업자 보수율 인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신설
2012년 05월 08일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2013년 04월 03일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갱신
2014년 09월 26일	전환 가능 대상 펀드 추가 및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갱신
2015년 04월 24일	비교지수 변경,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갱신, 법 개정사항 반영, 모집예정금액 확대, 집합투자대상 환매조건부매수 추가, 채권평가회사 추가,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추가
2016년 01월 11일	운용인력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2016년 07월 02일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년 07월 30일	국내 증권시장의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판매 및 환매 기준시점 변경
2016년 08월 16일	펀드 편입자산 매매·평가차익 분배유보 적용 및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갱신
2016년 10월 01일	운용인력 변경으로 인한 갱신
2017년 03월 31일	작성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갱신
2017년 11월 17일	운용역 변경에 따른 갱신
2018년 01월 16일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사항 보완,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2019년 01월 23일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투자대상 내 신용평가등급 관련 사항 보완, 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사항 보완
2019년 05월 03일	운용역 변경에 따른 갱신
2019년 09월 25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020년 03월 26일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사항 등의 보완
2020년 05월 26일	부책임운용역 변경에 따른 갱신
2021년 01월 29일	①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② 연환산 표준편차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4등급→3등급) ③ 전자증권법,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1년 04월 01일	부책임운용역 변경에 따른 갱신
2022년 02월 08일	①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②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2)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신영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6 (대표전화 : 02-6711-7500, 홈페이지 : www.syfund.co.kr)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기준일: 2021. 12. 31.)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혼합형·공모·국내)				운용 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허남권	1963	책임(대표이사)	88 개	42,148억원	5.02%	10.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 경력: 25년 5개월 - 현)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CIO 	
심창훈	1975	책임(채권운용본부장)	44 개	11,386 억원	5.00%	10.80%	5.02%	10.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 경력 : 10년 3개월 - NH-CA 자산운용 채권운용 - 현) 신영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임승현	1991	부책임(운용역)	12 개	1,491 억원	3.84%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 경력 : 3년 4개월 - 현) 신영자산운용 배당가치본부 	
김준영	1993	부책임(운용역)	16 개	2,705 억원	5.33%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 경력: 1년 8개월 - 현) 신영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주1) 이 투자신탁은 주식운용부문/채권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 운용역 부재시 등의 경우 주식운용부문/채권운용본부 내 다른 운용역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约定된 집합투자기구(공모 기준) : 허남권 1건, 10억원

나. 투자운용인력 최근 변경 내역

기 간	투자운용인력
2016.01.11 ~ 현재	심창훈
2017.11.17 ~ 2021.03.31.	고도희
2021.04.01. ~ 현재	임승현
2019.05.03 ~ 2020.05.25	이청운
2020.05.26 ~ 현재	김준영

(주1) 최근 3년간의 투자운용인력 변동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혼합), 추가형, 개방형, 전환형

나. 전환형 구조

(1) 투자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하기 4개 투자신탁의 범위내에서 투자대상 투자신탁을 변경(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 신영신종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 신영신종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
- 신영신종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 신영신종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2)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신영신종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

구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채권 60% 이상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채 및 통안채 중심으로 우량채권 및 어음 등에 60% 이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에 주력합니다.
주요 투자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신영신종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구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주식) : 60%이하 모투자신탁(채권) : 60%이하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의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는 집합투자재산의 60%이하 범위내로 하며, 채권 및 유동성 투자와 주식투자를 상호 균형있게 운용함으로써 이자소득과 주식투자에 따르는 자본이득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합니다.
주요 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신영신종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구분	주요내용
주요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주식): 60%이하 모투자신탁(채권): 60%이하
주요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의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는 집합투자재산의 60%이하 범위내로 하며, 채권 및 유동성 투자와 주식투자를 상호 균형있게 운용함으로써 이자소득과 주식투자에 따르는 자본이득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합니다.
주요 투자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기타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동 집합투자기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고 전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과 국내 채권 및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개인연금상품으로 이자·배당소득세가 면제되며 연간 72만원 범위 내에서 당해년도 저축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일정기간 적립 후 적립금을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상품으로서, 주식, 채권 및 어음 등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중장기적으로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지분증권 (주식)	60%이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2. 채무증권 (채권)	50%이하	-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을 제외한다)
3. 채무증권 (어음)	40%이하	-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4.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5. 장내파생상품	10%이하 (위험평가액기준)	-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6. 금리스왑거래	100%이하	-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7. 집합투자증권등	5%이하 30%이하	- 법 제110조에 의하여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법 제 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8. 투자증권의 대여	50%이하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9.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50%이하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10. 투자증권의 차입	20%이하	-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1.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 매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1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다만,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금액 또는 단기대출한 총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법제10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2. 금융기관 예치 3. 단기대출 4.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투자비율 적용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호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의 증권 등 자산이 가격변동으로 상기 1 내지 4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5호 내지 제10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대상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다만, 부도등으로 유예기간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하는 행위	
2. 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 (동일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까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또는 시행령제79조 제2항 제5호가목 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당해주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p>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각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4. 파생상품 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 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 일로부터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개월간
5. 계열회사 지분증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 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음.	
6.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투자신탁은 주식 등에 60% 이하를 투자하고, 우량 채권 등에 50% 이하를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혼합주식형)입니다.

① 주식투자: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편입비율 60% 이상 유지

-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여 제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보유하는 전략
- 시장 흐름을 추종하는 전략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
- 종목매도는 적정가치에 도달하였거나, 보다 저평가된 종목을 편입하기 위한 경우, 기업에 대한 전망을 바꿀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여 빈번한 매매를 지양

② 포트폴리오 구성

- 유니버스 구성: 당사의 재무적/정성적 기준에 따라 선별된 유니버스 내 종목군 안에서 투자 대상종목을 선정합니다. 분기 1회 신규종목 추가 및 편입종목 삭제 등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종목 가치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정기적 운용 회의를 통해 유니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자산배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근거한 자의적 자산배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으로의 교체매매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종목 발굴을 통한 주식선택에 집중합니다.
- 종목별 비중: 분산투자를 지향하되 시가총액 비중, 상대적 투자 매력도, 거래 유동성을 감안하여 비중 결정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③ 채권투자: 국채 및 통안채 중심으로 우량채권 및 여음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에 주력합니다.

-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하며, 회사채 및 어음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부채비율, 3년간 영업현금흐름, 금융비용부담률, 자기자본이익률, 유보율 분석을 통해 투자가능 목록을 작성합니다. 운용역은 투자가능 목록을 기반으로 하여 자산을 선별/투자하여 안정적 수익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콜, 정기예금 등 기타 유동성자산은 영업용순자본비율, 지급여력비율, 실질자기자본비율로 평가된 투자가능 목록 안에서 투자하여 효율적인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 자산배분은 드레이션(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가중평균만기로서 채권가격의 이자율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조정 및 수익률의 변동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산전체의 가중평균 잔존만기일(드레이션)을 약 1년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비교지수 : KOSPI 54% + KIS중단기지수(1~2년) 36% + Call 10%

(주1)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요 투자대상과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등록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됩니다.

(주2) 비교지수:

- KOSPI지수는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식으로 산출하여 주가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KIS중단기지수(1~2년)는 KIS채권평가사가 KIS종합채권지수에서 1~2년 구간의 채권을 대상으로 산출한 지수입니다.
- Call은 금융기관 상호간의 단기자금대차인 콜에 대한 이자율입니다.

(주3) 선정사유: KOSPI지수는 한국증시의 현황을 가장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로서 본 집합투자기구의 포트폴리오와 비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같은 복합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한국채권시장 중단기(1~2년)채권의 대표성을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KIS중단기지수(1~2년)와 유통이 활발하고 단기자금시장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Call금리를 선택하였습니다.

(2) 위험관리

당사는 이사회에서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관리하고, 이사회의 원활한 위험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하위 심의기구인 리스크관리심의회에서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자산별, 펀드별 거래한도 및 투자한도를 점검하며, 핵심 위험요인을 측정, 관리합니다. 경기적으로 운용부서 및 운용본부장에게 포트폴리오 위험, 요인분석 및 추적오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대표이사 이하 관계자들이 사후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결정합니다. 또한 당사는 균등투자 원칙을 토대로 분산투자를 하여 위험을 관리하며, 시장예측을 통한 편입비 조절을 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매매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하를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50% 이하를 채권에 투자하는 혼합주식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계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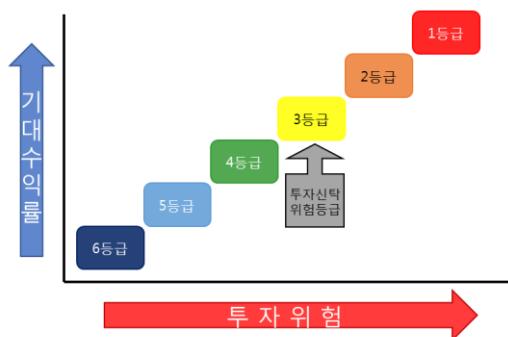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위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신고서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 환매'의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예상순자산가치 변동위험·이중가격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금액은 환매일의 출금액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탁해지 위험	투자신탁의 경우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신영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6 등급 중 3 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 하였습니다.(연환산 표준편차 : 12.67%)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고, 50% 이하를 채권에 투자하는 주식혼합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다양한 경제 변수에 수익이 변동되는 주식과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동 자산의 가치 상승 및 채권의 이자수익을 통해 투자수익을 실현시키기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 실제수익률을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고려하여 투자 위험등급을 분류 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수익률의 변동성(표준편차)은 투자기간 동안 펀드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써, 펀드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위험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위험이 작음을 의미합니다.

<신영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표>

등급	1(고위험)	2	3	4	5	6(저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주1) 실제 변동성은 매 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156주, n=156)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사용합니다.(만약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이 156주 이상인 경우에는 156주간만을 계산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이 155주인 경우 n= 155로 적용)

* 표준편차(수익률 변동성) 계산수식 :

$$\sigma = \sqrt{\frac{52}{n-1} \sum_{t=0}^{n-1} (r_t - \bar{r})^2} \quad \bar{r} = \frac{1}{n} \sum_{t=0}^{n-1} r_t$$

* r_t : 측정 기준시점에서 t주전 월요일의 주간 수익률

- 결산일이 속한 날의 t주전 월요일 기준가를 (t+1)주전 월요일 기준가로 나눈 값에 1을 차감하여 계산하되, 결산.배당 등을 감안하여 조정

(주2) 펀드의 투자전략 변경으로 인해 수익구조가 현저히 달라져 과거 수익률 변동성이 현재 펀드의 위험도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에서 펀드가 신규로 설정된 것으로 보아 위험등급을 다시 산정합니다.

(주3) 모자형 구조의 경우 자펀드는 자펀드의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4) 클래스가 구분된 펀드의 경우 모든 클래스의 펀드는 운용펀드의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5)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가 변경된다면 하더라도 당해 재간접펀드의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6) ELF, 레버리지ETF, 인버스 ETF, 부동산 펀드 등과 같이 수익률 변동성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한 경우에는 수익률 변동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집합투자기구는 수익구조·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주7)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한 결과, 그 값이 위험등급 경계구간에 있는 경우이거나 위험등급이 매년 계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등 투자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급을 덜 위험한 등급으로 하향 변경하지 않고 현재의 높은 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개인연금저축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1) 가입자격 : 만20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에 한합니다.

* **추가가입의 제한:**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의하여 신규로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신영개인연금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채권) 또는 신영개인연금60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혼합)에서 동 투자신탁으로 전환하거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다른 개인연금저축에서 동 투자신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2) 투자방법 : 수익자는 월납입식 또는 분기납입식으로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 범위 내에서 매회 1만원 이상 저축 금을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3) 투자기간

- (가) 저축기간은 다음 각호의 적립기간, 거치기간 및 연금지급기간을 통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 적립기간: 10년 이상 연단위
 - 거치기간: 적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최초연금지급기준일 직전일까지
 -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연단위
- (나) 수익자는 적립기간 중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1년 이상 연단위로 적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기간의 단축 후 연금지급개시일이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1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일 현재 저축재산평가금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연금지급기간 만료일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4) 연금지급 개시

- (가) 판매회사는 수익자가 별도로 연금지급개시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10년 이상 적립하고 수익자의 연령이 만55세가 경과된 후에는 수익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의 지급을 개시합니다.
- (나) 수익자는 저축기간 중 당초 연금지급개시일의 **직전제5영업일(T-4)**까지 연금지급개시일의 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후 최초 연금지급기준일은 신청일 이후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연금 지급방법

- (가) 연금의 지급은 “좌수분할식”에 의해 지급합니다. “좌수분할식”이란 매회 연금지급일 **직전제4영업일(T-3)**의 해당 수익자의 수익증권 잔고좌수를 잔여연금지급 회수로 균등분할하여 계산된 당회 지급분좌수를 환매청구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회 지급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 좌수에 매회 수익자별 연금지급일 **직전제2영업일(T-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계산된 평가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연금의 지급을 위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수익자가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text{연금지급액} = (\text{연금지급일 직전제4영업일(T-3)의 수익증권 잔고좌수} \div \text{잔여연금지급회수}) \times \text{연금지급일 직전제2영업일(T-1)에 공고되는 1,000좌당 기준가격} \div 1,000$$

- (나) 연금지급주기는 매월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 (다)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 매월단위, 3개월단위, 6개월단위 또는 1년 단위 상호간에 연금지급주기의 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라) 연금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약정연금지급일의 기산일은 최초 연금지급기준일로 합니다.
- (마) 판매회사는 약정연금지급일에 판매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나.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오후 3 시 30 분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② 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③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 * 매입 및 환매관련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

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금전 등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전 등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서 이 투자신탁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오후 3 시 30 분 이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2 영업일 (D+1)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D+3)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 (D+2)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 (D+3)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매입 및 환매관련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30분 경

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그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환매연기에 따른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라. 전환

이 투자신탁은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간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된 전환형 투자신탁입니다. 아래의 전환대상 투자신탁 상호간에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횟수는 연 4회에 한하고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환대상 투자신탁〉

신영신종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신영신종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신영신종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

신영신종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 ◆ 전환시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및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수익증권매입일)

〈채권형 투자신탁에서 주식혼합형으로 전환청구〉

신영신종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에서 신영신종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및 신영신종개인연금 가치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신영신종개인연금배당60증권(주식혼합)으로 전환청구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 매입일	전환처리시 적용 되는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4영업일) 의 기준가격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4영업일) 에 전환	판매회사의 영업일

〈주식혼합형에서 채권형 및 다른 주식혼합형으로 전환청구(1)〉

신영신종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과 신영신종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에서 신영신종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및 신영신종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으로 전환청구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 매입일	전환처리시 적용 되는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3영업일) 의 기준가격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전환(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4영업일) 의 기준가격	한국거래소 개장일

〈주식혼합형에서 채권형 및 다른 주식혼합형으로 전환청구(2)〉

신영신종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에서 신영신종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신영신종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과 신영신종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으로 전환청구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 매입일	전환처리시 적용 되는 영업일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4영업일) 의 기준가격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전환	한국거래소 개장일

(주1)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에 한합니다.

(주2) 수익자는 동일계좌내 저축수익증권의 일부전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이전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한 종목의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그 환매대금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 할 수 있습니다.

- (1) 이전청구시기: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 판매회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 투자신탁계약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전청구의 거절: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한도 초과등의 사유로 이전청구의 접수 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응하지 아니합니다.
- (3) 이전처리일: 수익자의 이전청구에 대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청구의 접수통보를 받은 경우에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일괄 이전 처리합니다.
 - ① **채권형[신영신종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은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3영업일(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이전합니다.
 - ② **주식혼합형[신영신종개인연금60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신영신종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은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이전합니다.
 - ③ **주식혼합형[신영신종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은 다른 금융기관의 접수통보 수령일로부터 제3영업일(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환매하여 제4영업일(15시 30분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이전합니다.
- (4) 이전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 이전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합니다.

(5) 이전수수료: 투자신탁계약 이전의 경우에 별도의 이전수수료를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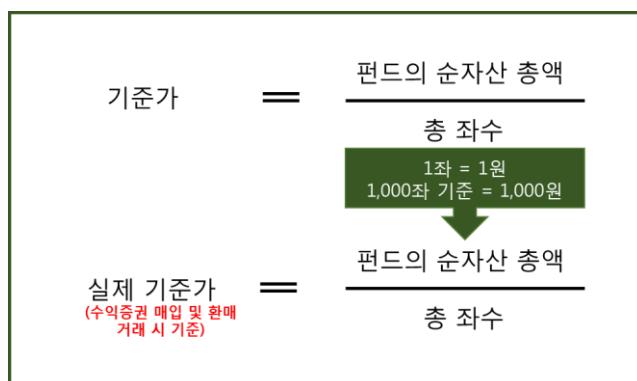
(6) 이전청구의 취소: 이전청구의 취소는 이전청구일 당일에 한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 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 일의 수익증권 총 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둘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다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가격으로 평가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
③-①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정보 중 낮은 가격. 다만, 발행회사가 일별가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 가격. (집합투자기구 설정시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수익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 수수료	후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신영신종개인연금60증권전환형(주식혼합)	(주1)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부과기준		가입시	환매시	환매시	환매시

(주1) 신영신종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 또는 신영신종개인연금가치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 신영신종개인연금배당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주식혼합)에서 동 투자신탁으로 전환하거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다른 개인연금저축에서 동 투자신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투자신탁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0.39	
판매회사 보수	0.90	매 3개월
수탁회사 보수	0.025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05	
총 보수	1.320	-
기타비용	0.004	사유 발생 시
총 보수.비용	1.324	-
(동종유형 총 보수)	1.42	-
총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24	-
증권거래비용	0.199	사유 발생 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 비용에 이 투자신탁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투자기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132	271	417	732	1,665

(주1) 투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이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년 8월 16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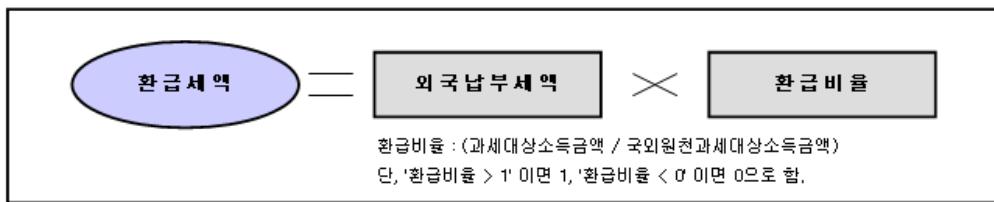
(4)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가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연금수령시 과세 : 비과세
 -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시 과세
 - : 이자소득 과세(주민세포함 15.4%). 단, 사망·해외이주 등 특별해지인 경우 비과세
또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5년 이내 해지시 해지추징세[저축불입액 × 4%](연간 7만 2천원 또는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을 추징함.
단,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며 사망·해외이주 등 특별해지인 경우 제외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를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① 연금수령시 과세 : 비과세
 - ②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시 과세
- 1) 소득세**
- 개인연금저축을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5.4% 소득세(주민세 포함)로 과세합니다.
 - 다만,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2) 해지추징세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추징세[저축불입액 × 4%](연간 7만2천원 또는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함)를 부과합니다.
- 단, 저축자가 사망하거나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의 해외이주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 월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나 질병의 발생
 5.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6.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주 1) 상기의 소득세와 해지추징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합니다.

(주 2)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연말정산

-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

(1)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2)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 환매 또는 이익분 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신탁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가격 산정시 반영하는 수익
기준가격	매매차익, 배당수익, 이자수익
과표기준가격	배당수익, 이자수익

(3)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 적용 사례

① 기준가격/과표기준가격 모두 수익이 발생하여 과세되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100원	1,1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100원)*세율(15.4%)=15.4원

② 기준가격/과표기준가격 모두 손실이 발생하여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00원	9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과세손익(-)이므로 세금 '0'원

③ 기준가격상 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손해가 난 상태이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자산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예시: 매매손실 200원 배당수익 50원, 이자수익 50원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00원	1,1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100원)*세율(15.4%)=15.4원

④ 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한 상태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없어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100원	9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과세손익(-)이므로 세금 '0'원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5 기(2018.12.23 ~ 2019.12.22)	삼덕회계법인	-
제16기(2019.12.23 ~ 2020.12.22)	삼덕회계법인	-
제17기(2020.12.23 ~ 2021.12.22)	삼덕회계법인	-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 억원 이하인 경우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아니합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원]

항 목	제 17 기	제 16 기	제15기
	2021.12.22	2020.12.22	2019.12.22
운용자산	23,354,238,931	24,142,422,085	28,138,207,967
유가증권	22,552,959,795	21,254,610,789	26,091,773,589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01,279,136	87,811,296	46,434,378
기타 운용자산	600,000,000	2,800,000,000	2,000,000,000
기타자산	72,139,049	31,822,146	126,295,298
자산총계	23,426,377,980	24,174,244,231	28,264,503,265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67,577,198	277,114,356	609,924,995
부채총계	167,577,198	277,114,356	609,924,995
원본	19,169,682,111	21,523,586,190	27,488,297,724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4,089,118,671	2,373,543,685	166,280,546
자본총계	23,258,800,782	23,897,129,875	27,654,578,270
운용수익	2,576,138,747	2,744,590,730	1,023,349,899
이자수익	98,007,557	219,772,558	241,630,278
배당수익	356,293,186	384,215,677	423,610,175
매매평가차손익	2,121,835,522	2,140,582,225	358,109,446
기타수익	2,482	20,270	0
운용비용	320,981,846	327,862,369	393,912,128
관련회사보수	319,092,117	326,072,607	392,087,331
매매수수료	942,249	713,392	473,717

기타비용	947,480	1,076,370	1,351,080
당기순이익	2,255,156,901	2,416,728,361	629,437,771

나. 대차대조표

[단위:원]

항 목	제 17 기	제 16 기	제15기
	2021.12.22	2020.12.22	2019.12.22
운용자산	23,354,238,931	24,142,422,085	28,138,207,967
현금및예치금	201,279,136	87,811,296	46,434,378
현금및현금성자산	201,279,136	87,811,296	46,434,378
대출채권	600,000,000	2,800,000,000	2,000,000,000
콜론	200,000,000	400,000,000	600,000,000
환매조건부채권매수	400,000,000	2,400,000,000	1,400,000,000
유가증권	22,552,959,795	21,254,610,789	26,091,773,589
지분증권	13,655,642,830	14,254,533,210	16,822,519,200
채무증권	8,897,316,965	7,000,077,579	9,269,254,389
기타자산	72,139,049	31,822,146	126,295,298
매도유가증권미수금	60,259,090	19,405,857	25,851,314
미수이자	9,874,850	12,416,289	43,626,050
선급비용	2,005,109	0	56,817,934
자 산 총 계	23,426,377,980	24,174,244,231	28,264,503,265
기타부채	167,577,198	277,114,356	609,924,995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55,189,376	5,743,045	0
해지미지급금	7,967,786	15,002,317	77,437,788
미지급운용수수료	22,277,528	22,178,588	26,630,545
미지급판매수수료	51,409,654	51,181,331	61,455,076
미지급수탁수수료	1,428,063	1,421,727	1,707,112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285,625	284,367	341,445
수수료미지급금	71,898	115,456	109,760
미지급이익분배금	28,947,268	181,187,525	442,243,269
부 채 총 계	167,577,198	277,114,356	609,924,995
원 본	19,169,682,111	21,523,586,190	27,488,297,724
이익잉여금	4,089,118,671	2,373,543,685	166,280,546
자 본 총 계	23,258,800,782	23,897,129,875	27,654,578,270
부채 및 자본 총계	23,426,377,980	24,174,244,231	28,264,503,265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항 목	제 17 기	제 16 기	제15기
	2020.12.23 ~ 2021.12.22	2019.12.23 ~ 2020.12.22	2018.12.23 ~ 2019.12.22

운용수익(운용손실)	2,576,138,747	2,744,590,730	1,023,349,899
투자수익	454,300,743	603,988,235	665,240,453
이자수익	98,007,557	219,772,558	241,630,278
배당금수익	356,293,186	384,215,677	423,610,175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3,585,075,664	3,862,370,789	2,010,565,376
지분증권매매차익	2,944,789,060	1,069,684,325	441,421,444
채무증권매매차익	10,756,933	69,249,016	15,208,422
지분증권평가차익	629,389,209	2,719,704,191	1,535,944,341
채무증권평가차익	140,462	3,733,257	17,991,169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463,240,142	1,721,788,564	1,652,455,930
지분증권매매차손	1,079,767,711	1,334,453,023	396,129,943
채무증권매매차손	20,940,325	99,165,241	28,601,004
지분증권평가차손	289,203,354	288,170,300	1,215,368,213
채무증권평가차손	73,328,752	0	12,356,770
기타운용수익	2,482	20,270	0
운용비용	320,981,846	327,862,369	393,912,128
운용수수료	94,277,252	96,339,671	115,844,012
판매수수료	217,563,124	222,322,544	267,332,578
수탁수수료	6,043,237	6,175,448	7,425,735
사무수탁수수료	1,208,504	1,234,944	1,485,006
매매수수료	942,249	713,392	473,717
기타운용비용	947,480	1,076,370	1,351,080
당기순이익	2,255,156,901	2,416,728,361	629,437,771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신영신종개인연금 60 증권전환형투자신탁(주식혼합)

[단위:백만좌,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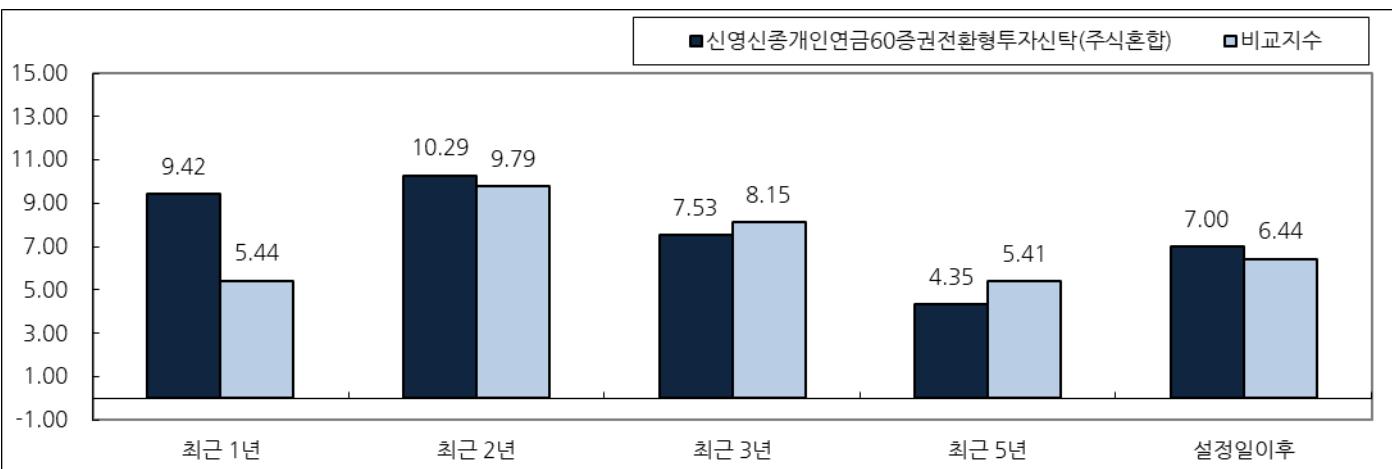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8/12/23~2019/12/22	30,400	30,397	1,495	1,521	4,407	4,450	27,488	28,097
2019/12/23~2020/12/22	27,488	27,655	1,739	1,677	7,704	7,670	21,524	24,078
2020/12/23~2021/12/22	21,524	23,897	1,829	2,284	4,346	5,330	19,170	23,288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20/12/23 ~ 2021/12/22	2019/12/23 ~ 2021/12/22	2018/12/23 ~ 2021/12/22	2016/12/23 ~ 2021/12/22	(%)
펀드	2004-12-23	9.42	10.29	7.53	4.35	7.00
비교지수	2004-12-23	5.44	9.79	8.15	5.41	6.44
수익률 변동성(%)	2004-12-23	10.29	14.66	12.70	10.73	1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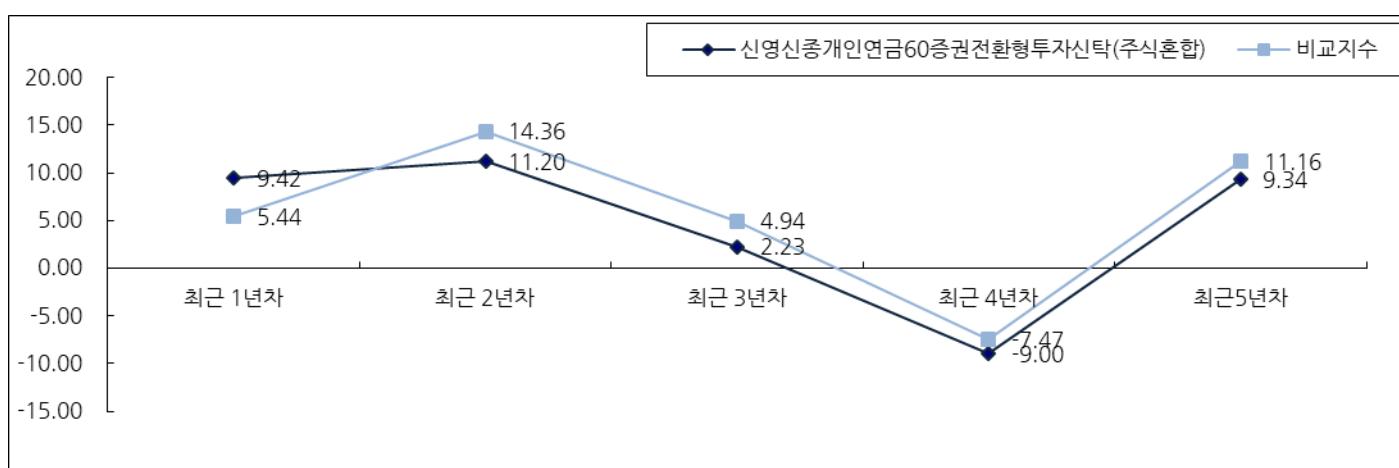
(주 1) 비교지수 : KOSPI 54% + KIS 중단기지수(1~2 년) 36% + Call 1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20/12/23 ~ 2021/12/22	2019/12/23 ~ 2020/12/22	2018/12/23 ~ 2019/12/22	2017/12/23 ~ 2018/12/22	2016/12/23 ~ 2017/12/22
펀드	2004-12-23	9.42	11.20	2.23	-9.00	9.34
비교지수	2004-12-23	5.44	14.36	4.94	-7.47	11.16

(주 1) 비교지수 : KOSPI 54% + KIS 중단기지수(1~2 년) 36% + Call 1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신영신종개인연금 60 증권전환형(주식혼합)

[2021.12.22 현재 /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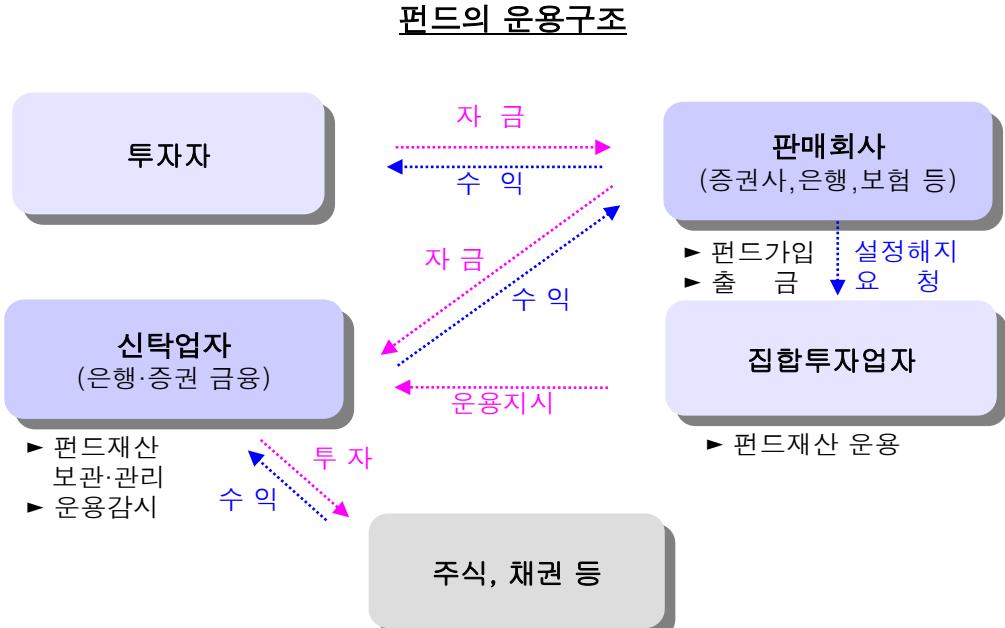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대한 민국	13,656	8,909	0	0	0	0	0	0	0	401	460	23,426
	(58.29)	(38.0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71)	(1.96)	(100.00)
자산 합계	13,656	8,909	0	0	0	0	0	0	0	401	460	23,426
	(58.29)	(38.0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71)	(1.96)	(100.00)

(주 1)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신영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6 (대표전화 : 02-6711-7500, 홈페이지 : www.syfund.co.kr)
회사 연혁	1996.08. 신영투자신탁운용(주) 설립 1996.08. 증권투자신탁 운용업 허가 (증업45332-235) 1997.05. 투자자문업등록 (등록번호 제44호, 증업41299-150) 1997.06. 투자일임업 허가 (증업41299-172) 1999.01. 자산운용회사 등록 (등록번호 9, 감독 7 6114-34) 2000.12. 유상증자 20억원 (자본금320억원) 2009.02. 신영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2015.10.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자본금	320억
주요주주 현황	신영증권(주) (85.9%), 코리안리재보험(주) (9.4%), 서울보증보험(주) (4.7%)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제25기 2021.3.31	제24기 2020.3.31	계정과목	제25기 2020.4.1~ 2021.3.31	제24기 2019.4.1~ 2020.3.31
현금 및 예치금	6,847	5,043	영업수익	56,562	38,588
유가증권	139,246	110,824	영업비용	13,462	19,190
유형자산	6,809	7,135	영업이익	43,000	19,368
기타자산	12,878	16,193	영업외수익	1,030	879
자산총계	165,780	139,195	영업외비용	60	66
예수부채	1,210	136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43,970	20,181
기타부채	8,299	5,070			
부채총계	9,509	5,206			
자본금	32,000	32,000			
이익잉여금	124,766	102,461	법인세비용	9,825	6,00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95	-472	당기순이익	34,145	14,172
자본총계	156,271	133,989			
부채와 자본총계	165,780	139,195			

라. 운용자산 규모

(2021.3. 31. 현재 / 단위 : 억원 / 일임자산 제외)

구분	증 권			MMF	파생 상품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재간접	실물 자산	총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설정액	27,129	9,442	961	1,581	0	0	0	0	79	0	39,192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주)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 1599-9999
홈페이지	www.kbstar.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②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④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⑦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가 투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 66 ☎ 02-6714-4615
홈페이지	www.hanais.com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약관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KIS자산평가	에프엔자산평가
주 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 02-399-335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 02-3215-1400	서울시 강서구 마곡 중앙2로 61 ☎ 02-721-5300
홈페이지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나. 주요 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종류 집합투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등은 아래의 투자자총회의 소집절차를 준용합니다. 다만, 종류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은 그 종류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 집합투자기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 ▶ 총 죠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죠수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 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 신탁업자의 변경 (단, 합병, 분할, 분할합병 및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및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 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이 상품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신영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syfund.co.kr)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환매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 (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결산서류는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임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가 해당 집합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투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만, 투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가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자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syfund.co.kr)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87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내용
〈증권거래〉	<p>1) 선정을 위한 기본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증개수수료) 대비 수익- 거래유형별 매매체결 능력의 우수성-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황 및 자금결재의 위험성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p>2)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운용역 및 매매담당자 등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각 구성원이 증개회사별로 10점 만점을 원칙으로 매 분기 평가 가능한 투자중개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선정3) 평가항목<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 및 정보의 질, 펀드 성과 기여도, 세미나 개최 및 기업탐방 주선 등의 조사분석서비스의 유용성과 주문집행의 정확성, 체결단가의 적합성, 정보사항의 신속성, 투자중개업자의 재무상태 및 자금결제의 안정성 및 업무 담당자의 역량 등 주문집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은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 특성 및 상기 선정을 위한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 없이 자산운용본부장이 결정하여 거래할 수 있음

(주 1) 매매대가 이익 : 증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증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는 용어로 가장 널리 불리웁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펀드코드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 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식형집합투자기구	일반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펀드로서 통상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채권형집합투자기구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로서, 주식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주식혼합형, 주식에 최대투자 가능비율이 50% 미만인 펀드를 채권혼합형이라고 말합니다.
주식혼합/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성과보수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사전에 투자설명서와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 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위험평가액	법 시행규칙 제4-54조(위험평가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위험평가액을 말합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리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해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해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